



2022년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 및 청정제주 구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라 한다)’ 보급을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I. 공모개요

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22.2.14.(11:00) ~ 2022.7.31. ※ **예산 또는 물량 소진 시까지**

※ 환경부 ‘무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오픈일정 미확정으로 오픈 일정에 따라 접수가 가능하오니 양지요망

○ 접수장소 : 제주도내 전기차 판매점 및 제주도의 전기차 판매점
(단 **제주도의 판매점인 경우**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주도에 전기차 판매점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함**(서식 4 참조))

* (특이사항) 2022년부터 제주도에서는 모든 차량 차고지증명제 적용으로 **반드시 제주도내 차량등록사무소에 차량등록해야 함**

보급대수 : (상반기)전기차 4,500대 범위 내 ※ **연간목표 : 5,500대**

○ 배정물량 : 승용 3,000, 화물 1,500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급차종 : 전기차 73종(승용 47종, 화물 26종) ※ 자세한 내용 8~10쪽 참조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되며, 변경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접수+출고·등록순(14일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접수)

※ 14일 이내 출고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접수등록, 14일 이내 미출고 시 해당 판매점 패널티 부여
(1개월간 해당 판매점 소속 전원 접수 불가)

! 전기차 구매 시, 높은 차량가로 인해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해당 사항 확인 필요함

□ 신청자격 : 제주도민 (도내 개인·개인사업자, 기업·법인등)

※ 개인·개인사업자는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기업·법인은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설립

- (개인)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제주도민
- (개인사업자) 무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 접수일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사용본거지 및 실사용자 주소지가 제주도로 한정(리스·렌탈)
 - 단, K-EV100 참여기업인 경우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사용본거지:제주도) 지원 가능
- (법인)제주도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제주도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국내영주권자(F-5 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종사자(E-7비자,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 (공공기관) 제주도 소재 공공기관¹⁾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
(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굴착기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 (렌터카, 전기택시) 전기차를 구입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간 영업용으로 미 운행한 경우
- 택시 구매자 중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미설치 한 경우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등

〈구매지원 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 시)
- 구매지원신청서 서식 등 당해 공고된 서식이 아닌 서식으로 신청한 경우 무효
- 사용본거지 제주도로 한정
-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국도비) 및 이자가 환수됨**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 **보급기준 : 개인·개인사업자 1대(동일 차종), 법인·기관(제한 승용 50대, 화물 10대)**

구 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관
승용차	1대	1대(추가: 검토확인)	50대
화물차	1대	1대(추가: 검토확인)	10대(추가: 검토확인)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승용차 간, 화물차 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기 구매한 경우 포함)
 - ※ 전국 공통 사항이므로, 타 기관에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위반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개인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위해 동일한 차종 2대 이상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 후(사진 또는 필요시 현장확인) 사업 여건 및 보급 상황 등에 따라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

- 법인이 다수의 전기차를 구매 지원 신청한 경우 서약서 및 사업계획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사업 내용 및 보급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이 미지원될 수 있음
 - 전기렌터카를 의무운행기간(2년 + 1년) 이상 정상운행하고, 보조금을 받은 해부터 3년간 각 차량별 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 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 운행실적 보고사항 : 성명(법인명), 연락처,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운행기간, 주행거리 등
 - ※ 제주도내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대여사업체 등도 구매 가능함. 단, 도내 본사를 둔 법인 우선보급
 - ※ 단, 교통정책과 렌터카총량제에 따른 감차 미이행 업체나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의 타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도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외)
 - **(화물차, 법인·기관)** 사업계획서 제출 시 10대까지 지원 가능. 10대 이상 필요한 경우 사업장 검토 확인 후 사업여건 및 보급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물량 부족 등 보급여건에 따라 10대 미만으로 지원될 수도 있음)

□ 보조금 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단위: 만원)

구분	승용		화물				
	일반	초소형	소형	소형특수 (냉동탑차)	경형	초소형	
계	1,100	800	1,900	2,283	2,043	1,500	1,000
국비	700 (차등)	400	1,400 (차등)	1,783	1,543	1,000	600
도비	400(비율)	400	500	500	500	500	400

- 승용일반, 화물(소형) 차등지원, 승용초소형, 화물(경형, 초소형)은 도비 정액지원

○ 전기승용차 ※ 법인가관 보조금 지급: 국비 100% 도비 50% 지급(렌트카 포함, 전기택시 제외)

〈승용차 보급〉

(단위: 대)

구분	계	일반도민 (40%)	소상공인· 취약계층 (10%)	법인·기관 (40%)	택시 (10%)
보급대수	3,000	1,200	300	1,200	300

※ K-EV100 참여 법인이 차량구매 신청시 우선보급(증빙서 제출)

-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100): 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비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IS) 설치 완료서 제출 시 보조금 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자 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면허증 제출)

※ 차상위 이하 계층 및 택시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은 중복 불가함

○ (승용) 도비보조금 비율지원 산식

= [해당차량 국비보조단가/국비보조금 최대지원단가(700만원)] × 지방비단가

! 택시 및 렌트카는 의무운행기간(2년)과 추가 1년 동안 영업용(택시렌트카)으로 운행해야 하며, 2년 내 명의 이전 시 道 저탄소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정한 목적(재판매 등)으로 이전 시, 운행기간 별 보조금 환수율(6쪽 참고)에 따라 구매 보조금이 환수됨
 ※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 후 재구매 신청시 보조금 미 지원

〈화물(소형, 경형, 초소형)차 보급〉

(단위: 대)

구분	계	일반도민 (50%)	중소기업 (5%)	1차산업 (15%)	법인·기관 (15%)	소상공인·취 약계층(15%)
보급대수	1,500	750	75	225	225	225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 전환 시 추가 폐차 보조금 지원(예산 범위 내)

✓ 내연기관 차량 폐차 → 전기차로 전환 시 100만원 추가지원 ※ 예산 소진 시까지

- 본인 소유 내연기관 차량(LPG 차량 제외)이, 공고일 직전 2년 이상 도내에서 연속하여 등록되었고,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본인이 소유한 차량이면서, 최초 공고일 이후 폐차한 차량에 한함

- 공동명의 차량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가 아닌 공동명의자의 위임장<서식 2> 및 인감증명서 제출해야함(단독 명의로 신청할 때에 한함)
- 도(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폐차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개조 등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 도(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등 지원받은 차량
- ※ 내연기관 차량 도외 반출 시 추가 보조금 지원 폐지

□ 의무 준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1. 전기차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 및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분거지인 제주도에서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함**

※ 택시, 렌터카 : 의무운행기간 (2년) + (1년) 합계 3년 이상 제주도내 의무운행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을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2. 전기차 매매제한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제주도내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주도내에서 매매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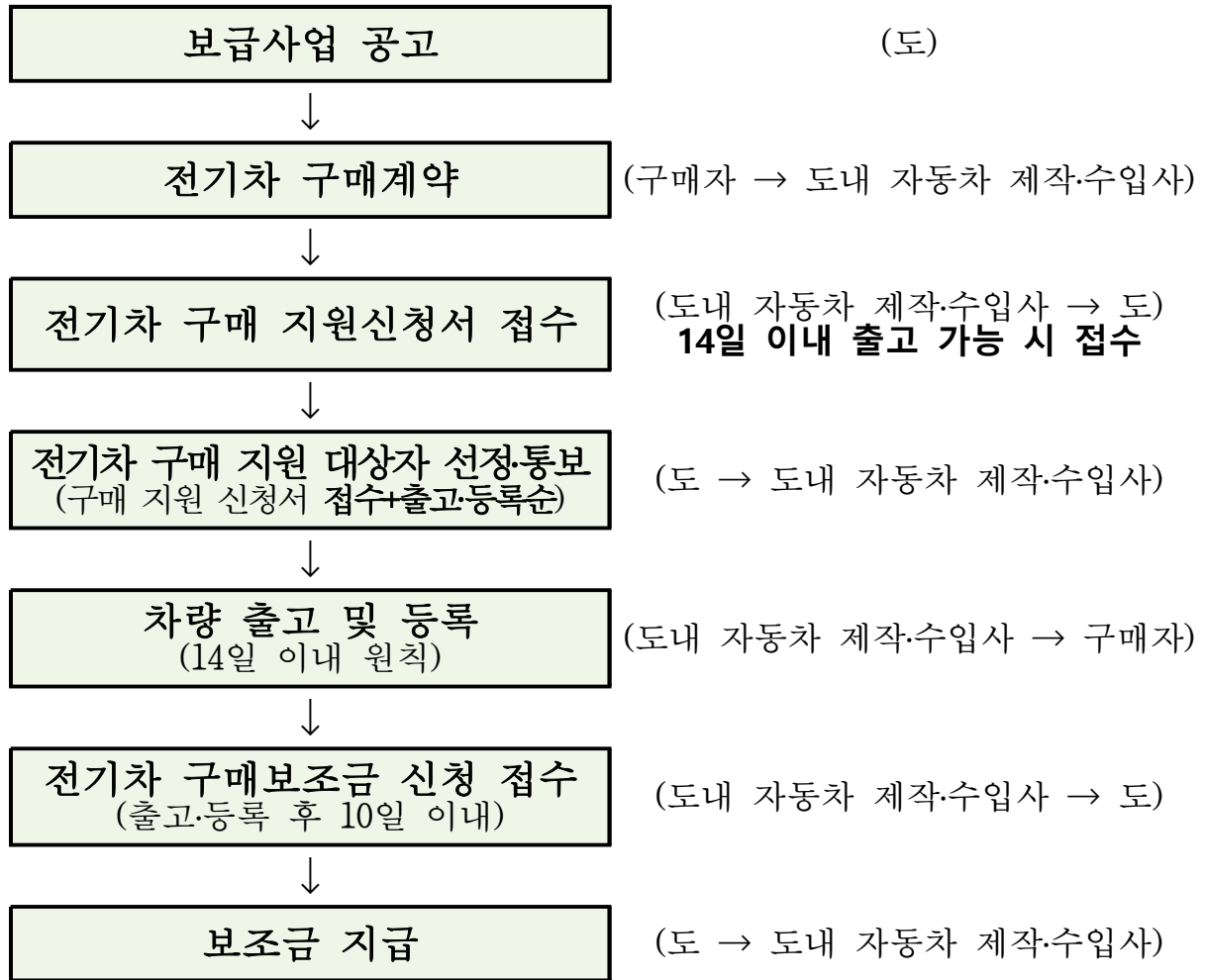
- 도외 반출 시 <표1>의 환수율 표에 따라 도비 보조금 환수 조치

- (택시렌터카최초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 후 재구매 신청시 보조금 미지원

□ 신청서류 및 접수절차

- 신청서류 : 별표 2 참고
- 접수 및 구매절차

< 민간 보급 > : 보조금 최종수령자가 전기차 제작·수입사인 경우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도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 수령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차량이 출고 및 등록(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출고 확정된 건에 한하여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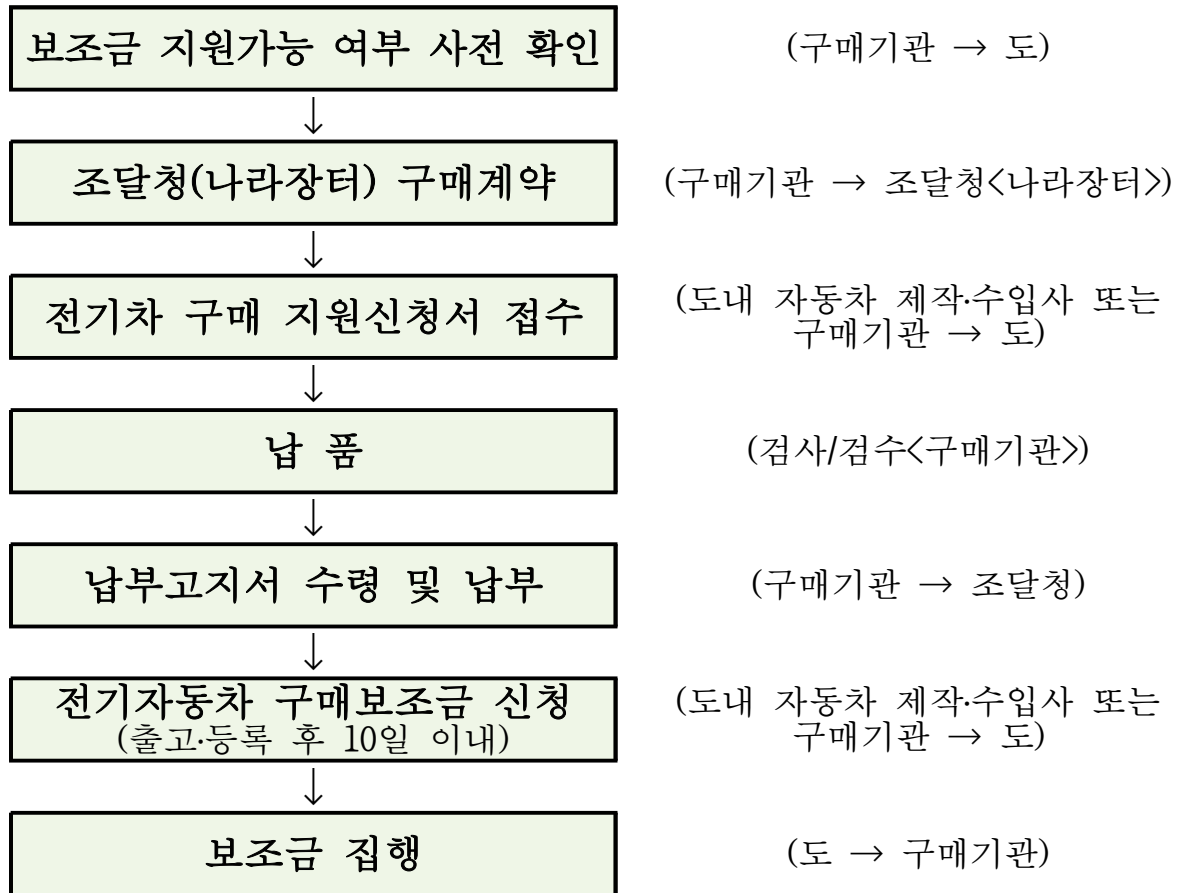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에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으로 등재된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 지원 가능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가능

※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에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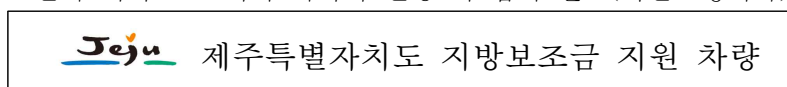
< 공공 보급 > : 공공기관은 조달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서식 1>의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환경부 무공해차통합누리집(ev.or.kr)에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으로 등재된 전기차에 한해서 보조금 지원 가능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道 보조금 지급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 사회복지사업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시설·기관·단체 차량은 ‘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를 해야 함

※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차량 지원표시 : 좌·우측 문 표시)

<설치 예시> ※ 예시 이미지 변경 시 협의 필요(저탄소정책과)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민간에게 지원되는 전기차는 예외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2022년 2월 기준)

□ 지원차종 : 전기차 73종(승용 47종, 화물 26종)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지원 금액 기준으로 지원됨

※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5.5천만원 미만 전액지원, 5.5~8.5천만원 미만 50%지원, 8.5천만원 이상 미지원
주의) 대창모터스(소형)는 구매 후 고장발생 시 서비스 지원이 안되고 있음 - 모든 구매자는 구매전 사후 서비스 확인 필요

※ 향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변경 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 해당 내용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 에서 열람

※ 차량별 판매가격 등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으로 문의

□ 승용(47종)

구분	제 조 ·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보조금(만원)		
					계	국비	지방비
승용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20인치	4.7	392.3	1,100	700	4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빌트인캠 미적용	4.9	412.8	1,100	700	400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4.9	403.5	1,100	700	400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20인치	4.4	363.5	1,068	680	388
		아이오닉5 AWD 롱레인지 19인치	4.5	377.5	1,093	696	397
		아이오닉5 AWD 스탠다드 19인치	4.7	309.3	1,054	671	383
		아이오닉5 2WD 스탠다드 19인치	4.9	329.5	1,100	700	400
		G80 Electrified	4.2	427.5	537	342	195
		GV60 스탠다드 2WD 19인치	5.0	456.5	550	350	200
		GV60 스탠다드 AWD 19인치	4.4	396.8	548	349	199
		GV60 스탠다드 AWD 20인치	4.2	379.0	528	336	192
		GV60 퍼포먼스 AWD 21인치	3.9	354.5	501	319	182
	기아	EV6 스탠다드 2WD 19인치	5.5	369.5	1,100	700	400
		EV6 롱레인지 2WD 20인치	4.8	436.5	1,100	700	400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4.5	400.3	1,100	700	400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5.2	473.8	1,100	700	400
		EV6 롱레인지 4WD 19인치	4.9	447.0	1,100	700	400
		EV6 스탠다드 4WD 19인치	5.2	352.5	1,100	700	400
		니 로 (HP)	5.2	375.9	1,100	700	400
	르노삼성	ZOE ZEN	4.5	290.8	1,024	652	372
		ZOE INTENS ECO	4.5	290.8	1,024	652	372
		ZOE ITENS	4.5	290.8	1,024	652	372
	BMW	i3 120Ah Lux	4.9	226.0	975	621	354
		i3 120Ah SoL+	4.9	226.0	975	621	354
		BMW iX3 M Sport	3.8	331.4	469	299	170

구분	제 조 · 수 입 사	차 종	가 중 연 비 (km/kWh)	가 중 거 리 (km)	보 조 금(만 원)		
					계	국 비	지 방 비
승 용	한국GM	볼트	4.9	378.8	1,100	700	400
		볼트EUV	5.1	372.0	1,052	670	382
	스텔란디스	Peugeot e-208 Allure	4.3	236.8	828	527	301
		Peugeot e-208 GT	4.3	236.8	828	527	301
		Peugeot e-2008 SUV Allure	4.1	224.5	781	497	284
		Peugeot e-2008 SUV GT	4.1	224.5	781	497	284
		DS Crossback E-tense So Chic	4.1	224.5	781	497	284
		DS Crossback E-tense Grand Chic	4.1	224.5	781	497	284
	테슬라	Model 3 Performance HPL	4.9	464.0	495	315	180
		Model 3 Standard Range Plus RWD HPL	5.8	363.9	487	310	177
		Model Y Long Range	5.2	491.7	495	315	180
		Model 3 Long Range HPL	5.4	506.0	495	315	180
	벤츠 코리아	EQA250	3.8	278.1	440	280	160
		EQA250(MY22)	3.8	288.0	469	299	170
쌍용	코란도 e-motion 2WD HeatPump	4.7	293.3	1,045	665	380	
에디슨이브이	SMART EV Z	5.6	145.9	920	586	334	
초 소 형	르노삼성	TWIZY	-	-	800	400	400
		TWIZY (K1J05-1Z)	-	-	800	400	400
	대창모터스	DANIGO	-	-	800	400	4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800	400	400
	씨보모빌리티	CEVO-C	-	-	800	400	400
		CEVO-C SE	-	-	800	400	400

*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 기준으로 지원됨(여기 제시된 금액은 참고용임)

□ 화물(26종)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보조금(만원)		
						계	국비	지방비
화물	소형	현대자동차	포터일렉트릭	0.268	220.0	1,900	1,400	500
		기아자동차	봉고3	0.268	220.0	1,900	1,400	500
		한신자동차	플러스	0.758	212.6	1,705	1,257	448
			플러스2.0카고	0.676	183.0	1,663	1,226	437
		제인모터스	칼마토EV	0.404	85.0	1,431	1,055	376
		파워프라자	봉고3evPEACE	0.452	88.6	1,403	1,034	369
			봉고3evPEACE 더블캡	0.609	93.8	1,330	980	350
		에디슨모터스	SMART T1.0	0.461	123.2	1,536	1,132	404
		코리아에어카 고에이젠티	LSEV (Z08)	0.521	114.9	1,461	1,077	384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0.447	144.1	1,631	1,202	429
		제이제이모터 스	비바	0.457	173.0	1,739	1,282	457
			젤라	0.153	184.0	1,900	1,400	5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49.9km)	0.785	149.9	2,043	1,543	500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186.1km)	0.422	186.1	2,283	1,783	5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	-	1,500	1,000	500
	초소 형	대창모터스	다니고3			1,000	600	400
			다니고3 픽업			1,000	600	400
		디피코	포트로			1,000	600	400
			포트로-탑			1,000	600	400
			포트로-탑S			1,000	600	400
			포트로-픽업			1,000	600	400
			포트로-픽업S			1,000	600	400
			포트로-픽업S			1,000	600	400
		마스타전기차	마스터 HIM			1,000	600	400
			마스터 VAN			1,000	600	400
		에디슨이브이	D2C			1,000	600	400
D2P					1,000	600	400	

* 보조금은 환경부 무공해차구매표보조금지원시스템(www.ev.or.kr) 기준으로 지원됨(여기 제시된 금액은 참고용임)

제출 서류 ※ 신청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시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도장날인) 필요**
 - ※ 시스템 접수 시 제출서류 등 보완사항 발생 시 대상자 선정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 ※ 모든 서류 유효기간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상별 제출서류
 - 일반 제주도민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1년간 과거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법인 :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 ※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및 설립 등을 해야 함
 - 외국인인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혹은 영주증
 -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 재직증명서 등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각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 서식)
- 기타 추가 서류
 - 개인사업자인 경우 : 2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동일차종)를 구매하는 경우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4대보험 가입현황 등

《 우선보급 신청자별 증빙서류 》

대상자	증빙서류
○ 차상위 이하계층	○ 차상위증명서 등 1부
○ 상이·독립유공자 ○ 장애인 ○ 다자녀가구(2005년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 ○ 소상공인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1부 ○ 장애인등록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만18세 이후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등)
○ 택시	○ 택시 사업자면허증 1부
○ 내연기관차 폐차하고 전기차 구입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사본 1부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1부.
○ K-EV100 참여업체	○ K-EV100 관련 증빙 서류

- 전기차 구매보조금 청구 시 ※ 번호 순으로 첨부**
 - ①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② 자동차등록증
 - ③ 세금계산서 ④ 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 ⑤ 통장사본
 - ⑥ 추가 폐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내연기관 차량 폐차 후 전기차 전환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내연기관 차량 폐차 시)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공동명의의 내연기관 차량으로 추가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전기차 구매는 단독 명의로 할 경우)
 - ⑦ K-EV100 참여업체(K-EV100 관련 증빙 서류)

전기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 관련 문의처

기 관	연 락 처
제주 전기차·충전기 통합콜센터(24시간 연중무휴)	1899-8852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 - 차종별 전기차 구매 상담 -	10쪽 참조
전기차 보급관련 민원 문의 - 道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지원팀 -	710-2616, 2613

전기차 보급 관련 대출상품 문의처

- ※ 하나은행 전기차구입 대출상품(EV 1Q 오토론), 문의전화 752-1111(내선170)
- ※ 현대캐피탈 리스상품 안내 : 문의전화 02-3150-5844
- ※ 전기차 구입 대출상품 출시 예정 안내 : 농협 720-1317, 제주은행 1588-0079

별표4

전기차 제작·수입사별, 도내 판매점('22.2월)

제작·수입사	판매점명	문의전화 (064)	소재지	시승 가능여부
현대자동차 (12)	제주지점	742-8701	제주시 삼부로 83	사전예약
	제주중부지점	756-4111	제주시 연삼로 215	
	서귀포지점	797-4579	서귀포시 동문로 4	
	제주연북로지점	756-5461	제주시 연북로 454	
	제주광양지점	722-8001	제주시 서광로 165	
	서제주대리점	748-0888	제주시 노형로 336	
	제주성산대리점	782-7782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276	
	서귀중앙대리점	733-0885	서귀포시 일주동로 8475	
	일도대리점	751-5353	제주시 연삼로 526	
	화북대리점	726-1666	제주시 일주동로 224	
	제주하귀대리점	713-7700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179	
기아자동차 (11)	대정지점	794-3453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212	사전예약
	동제주지점	752-9510	제주시 동문로 153	
	삼다대리점	723-6080	제주시 동광로 48	
	서귀포지점	732-8611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34	
	성산포지점	782-6001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35	
	신제주지점	746-9141	제주시 도령로 86	
	오성대리점	743-5566	제주시 일주서로 7810	
	남원지점	764-5161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31	
	제주지점	753-8501	제주시 중앙로 359 신해빌딩	
	한림지점	796-8131	제주시 한림읍 명랑로 28	
	한라대리점	752-4690	제주시 연삼로 177	
르노삼성 (2)	연북로지점	757-3366	제주시 연북로 440	상시가능
	제주지점	711-1100	제주시 연삼로 158	
BMW	제주전시장	757-7301	제주시 연삼로 120	상시가능
GM (2)	제주선진전시장	723-3004	제주시 노형로 399, 사라빌딩 1층	대리점 문의
	제주신성전시장	757-8855	제주시 도남로 89	
아우디	제주전시장	748-2211	제주시 연삼로 111	상시가능
재규어	제주전시장	805-0300	제주시 오라삼동 연삼로 136	사전예약
쌍용자동차 (5)	제주전시장	743-0088	제주시 도령로 9 (노형동)	
	제주행운	727-7775	제주시 박성내동길 56(아라이동)	
	서귀포	763-5656	서귀포시 중앙로 117번길 2	
	한림	796-1777	제주시 한림읍 대림4길 29	
	대정	794-6363	서귀포시 동일하모로 149번길 5	
에디슨EV	쎄미시스코제주지점	805-9470	제주시 청사로 11, 주연빌딩 1층(도남동)	상시가능
쎄미시스코	제주센터	805-3425	제주시 연북로 746	상시가능
벤츠	제주지점	800-9800	제주시 연삼로 101	사전예약
스텔란티스	제주지사	743-5001	제주시 연삼로 145	대리점 문의
케이에스티일렉트릭	제주전시장	799-0015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 179 1층	상시가능
테슬라	홈페이지 : www.tesla.com/ko_kr/models / 콜센터 : 080-617-1399 제주시 연삼로 136 064-786-0310			
마스타전기차	콜센터 : 02-590-7286 / 홈페이지 : masta-ev.co.kr			
대창모터스	콜센터 : 043-535-6336 / 홈페이지 : http://export08.expdev.ecplaza.net/			
제인모터스	콜센터 : 053-630-2800			
일진정공	콜센터 : 031-376-9012			
디피코	콜센터 : 033-340-4800 / 홈페이지 : https://dpeco.com/			

※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은, 전기차 제작·수입사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도외 판매점인 경우 제주도에 사전에 등록된 판매점에 한함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제주도내에서 의무운행기간(2년)을 미준수하고 도외로 이전 또는 판매**하거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 준수 및 추가 1년 이상 정상운행 하여야 함.(택시, 렌터카)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매각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경과 후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매각 후 구매신청 등)시 최초등록일 기준 3년간 보조금 미지원
- 제주도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등)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제주도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불가피하게 폐차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한국환경공단이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에는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전기차 구매 이전에 전기차 보험가입 시 자차보험을 가입해도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니 보상절차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사전확인이 필요함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신청 시 14일 이내에 출고 가능한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해당 지점에 패널티 부여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금 지급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제주도가 해당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을 이행할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전기렌터카 / 전기택시] 의무운행 3년 이상 정상운행 관련 서약서

- [전기렌터카 / 전기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의무운행기간(2년 + 1년) 이상 정상 운행할 것을 서약하며, 만일 최초등록일로부터 의무운행기간 2년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할 것과,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미이행하였을 경우 전기차 구매신청 시 보조금이 미지원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 보조금을 받은 해부터 3년간 각 차량별 운행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보고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운행실적 의무보고사항 : 성명(법인명), 연락처,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운행기간, 주행거리 등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도외 지역 전기자동차 판매점 등록신청서

제작·수입사명			
판매점명		대표자	
소재지주소			
취급품목	승용차, 화물차, 초소형승용, 초소형화물, 냉동탑차, 기타()		
<input type="checkbox"/> 담당자 (대표메일:)			
성 명		직 함	
핸드폰		직통전화	
<input type="checkbox"/> 시스템담당자			
성 명		직 함	
핸드폰		직통전화	
<input type="checkbox"/> 보조금지급 총괄 담당자			
성 명		직 함	
핸드폰		직통전화	

제주도외 지역 전기차 판매점 등록 서약서

- 제주도민들에게 전기차를 판매함에 있어 제주도의 공고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아래 사항을 철저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구매지원 신청서를 비롯하여 모든 서식을 해당 공고문에 나온 서식을 활용하여 전기차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모든 차종에 차고지증명제 시행 등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해한 후 전기차를 판매하겠습니다.
 - 무공해시스템 보완사항 발생시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판매된 차량은 반드시 제주도내 차량등록사무소를 통하여 등록하고 차량인도는 제주도에서 하겠습니다.
 - 공고문 내용에 미 기재된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주도의 해석에 따르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